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됨을 법률에 명시함(안 제14조제2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.

(전문위원 이 화 실)